2016년 귀속 세액공제증명서류 : 기본(지출처별)내역 [의료비]

(조회기간 : 2016년 01 ~ 12월)

■ 환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김상원	930302-*****

■ 의료비 지출내역 (단위:원)

사 업 자 번 호	상 호	종 류	지출금액 계
2-20-48*	메****	일반	2,500
2-29-76*	맥***	일반	628,400
3-96-11*	성***	일반	87,700
4-36-02*	성***	일반	7,000
의료비 인별합계금액			725,600
안경구입비 인별합계금액			0
인별합계금액			725,600

- 1. 세액공제대상금액 :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(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)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근로자 총급여액의 3%를 초과한 금액
 - ※ 사내근로복지기금,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,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금 등으로 지급한 의료비, 국민건강보험 공단으로부터 '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'을 받는 경우 해당 의료비,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·성형수술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의약품(보약포함)구입 비용은 세액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되지 않음
- 2. 세액공제대상금액 한도 : 본인·장애인·65세 이상 자·난임시술비(한도없음), 그 외 부양가족(700만원) ※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기본공제대상자 1인당 연 50만원 이내



2016년 귀속 세액공제증명서류 : 기본(지출처별)내역[교육비]

(조회기간 : 2016년 01 ~ 12월)

■ 학생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김상원	930302-*****

■ 교육비 지출내역 (단위:원)

교육비종류	학교명	사업자번호	지출금액 계
대학교	***대학교	**4-82-00***	2,118,000
인별합계금액			2,118,000

- 1. (아이사랑카드)가 기재된 자료는 아이사랑카드를 이용하여 지급한 보육료 중 부모부담금액(정부지원금 제외)이며, 추가로 지급한 보육료가 있는 경우 해당 보육시설에서 '교육비납입증명서'를 발급받아 공제 가능
- 2. 세액공제대상금액: 근로자 본인 및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(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)이하인 배우자·직계비속·형제자매·입양자·위탁아동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와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(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. 직계존속 포함)을 위해 지급한 비용
- 3. 공제대상금액 한도 : 근로자 본인·장애인특수교육비(전액), 취학전 아동·초·중·고등학생(연 300만원), 대학생(연 900만원), 교복구입비용(중·고등학생 1명당 연 50만원) ※ 장애인 특수교육비 :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에 지출한 비용 및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기본공제대상 장애인을 위해 발달재활서비스제공기관에 지출한 비용

일련번호: 20170118-57586468



전자문서(pdf파일)로 발급된 소득세액공제증명서류입니다. 전자문서는 출력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 전자문서 진본여부 확인은 홈페이지(www.hometax.go.kr) 자료실을 참고 바랍니다.

2016년 귀속 소득공제증명서류: 기본(사용처별)내역[신용카드]

(조회기간 : 2016년 01 ~ 12월)

■ 사용자 인적사항

일반

	성 명	주	민 등 록 번 호
	김상원	Ç	930302-*****
■ 2014년도 사용액계			(단위:원)
일반	0		
전통시장	0	인별합계금액	0
대중교통	0		
■ 2015년도 사용액계			(단위:원)

전통시장 인별합계금액 2,700 대중교통

■ 2016년도 사용내역 (단위:원)

구분	선택한 기간의 사용금액 중 공제대상금액	추가공제율 사용분 계산을 위한 상반기사용액 (전통시장사용액+대중교통사용액)
일반	488,590	
전통시장	0	0
대중교통	0	0
인별합계금액	488,590	

- 1. 선택한 기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공제대상금액: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기간 동안 사용한 금액을 대상으로 소득공제액을 계산하므로 사용자가 선택한 기간 동안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공제대상으로 선택한 자료가 조회됩니다.
- 2. 추가공제율 사용분 계산을 위한 상반기 사용액: 추가공제율 사용분(직불카드·현금영수증·전통시장·대중교통 본인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공제)은 근로기간에 상관없이 상반기 전체 사용액이 조회됩니다.

※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요건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

2016년 귀속 소득공제증명서류: 기본(사용처별)내역[신용카드]

(조회기간 : 2016년 01 ~ 12월)

■ 사용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김상원	930302-*****

■ 2016년도 사용내역

사 업 자 번 호	상 호	종 류	공제대상금액
214-81-37***	비씨카드 (주)	일반	488,590

- 1. 선택한 기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공제대상금액 :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기간 동안 사용한 금액을 대상으로 소득공제액을 계산하므로 사용자가 선택한 기간 동안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공제대상으로 선택한 자료가 조회됩니다.
- 2. 추가공제율 사용분 계산을 위한 상반기 사용액: 추가공제율 사용분(직불카드·현금영수증·전통시장·대중교통 본인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공제)은 근로기간에 상관없이 상반기 전체 사용액이 조회됩니다.
- ※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요건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일련번호: 20170118-57586468

(단위:원)



2016년 귀속 소득공제증명서류: 기본(사용처별)내역 [직불카드등]

(조회기간 : 2016년 01 ~ 12월)

■ 사용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김상원	930302-*****

■ 2014년도 사용액계 (단위:원)

일반	2,800,855		
전통시장	78,450	인별합계금액	2,919,705
대중교통	40,400		

■ 2015년도 사용액계 (단위:원)

일반		
전통시장	인별합계금액	6,405,995
대중교통		

■ 2016년도 사용내역 (단위:원)

구분	선택한 기간의 사용금액 중 공제대상금액	추가공제율 사용분 계산을 위한 상반기사용액
일반	9,472,987	
전통시장	111,000	2,599,947
대중교통	68,300	
인별합계금액	9,652,287	

- 1. 선택한 기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공제대상금액 :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기간 동안 사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공제액을 계산하므로 사용자가 선택한 기간 동안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공제대상을 선택한 자료가 조회됩니다. (일부 사용액을 선택해제한 경우 선택 해제한 금액은 차감되어 표시)
- 2. 추가 공제율 사용분 계산을 위한 연간 사용액: 추가공제율사용분(체크카드 등·현금영수증·전통시장·대중교통· 본인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공제)은 근로기간에 상관없이 연간 사용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선택한 기간과 상관없이 2015년 연간 전체 사용액이 조회됩니다.
- ※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요건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

2016년 귀속 소득공제증명서류: 기본(사용처별)내역 [직불카드등]

(조회기간 : 2016년 01 ~ 12월)

■ 사용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	
김상원	930302-*****	

■ 2016년도 사용내역

(단위:원)

			(2112)
사 업 자 번 호	상 호	종 류	공제대상금액
214-81-37***	비씨카드 (주)	일반	1,441,200
214-81-37***	비씨카드 (주)	전통시장	47,100
214-81-37***	비씨카드 (주)	대중교통	68,300
202-81-45***	삼성카드주식회사	일반	655,170
202-81-45***	삼성카드주식회사	전통시장	0
202-81-45***	삼성카드주식회사	대중교통	0
202-81-48***	신한카드 주식회사	일반	7,166,147
202-81-48***	신한카드 주식회사	전통시장	63,900
202-81-48***	신한카드 주식회사	대중교통	0
104-86-56***	하나카드 주식회사	일반	210,470

- 1. 선택한 기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공제대상금액 :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기간 동안 사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공제액을 계산하므로 사용자가 선택한 기간 동안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공제대상을 선택한 자료가 조회됩니다. (일부 사용액을 선택해제한 경우 선택 해제한 금액은 차감되어 표시)
- 2. 추가 공제율 사용분 계산을 위한 연간 사용액: 추가공제율사용분(체크카드 등·현금영수증·전통시장·대중교통· 본인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공제)은 근로기간에 상관없이 연간 사용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선택한 기간과 상관없이 2015년 연간 전체 사용액이 조회됩니다.
- ※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요건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